

MYONGJI UNIVERSITY



명지대학교 입학안내

2026 명지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믿음의 대학,
믿을 수 있는 인재

Your Future Begins Here!



CONTENTS



2026
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10	I. 모집유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0	VI. 전형방법
12	II.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21	VII. 제출서류
15	III. 지원자 유의사항	23	VIII. 기타 안내사항
16	IV. 전형별 안내	25	IX. 참고자료(전년도 입시 결과)
19	V. 지원자격 공통	26	X. 별첨(각종 제출서류 양식)

명지의 이념

설립정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주후 1956년 1월 23일 설립자 유상근



대학이념

명지대학교는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파를 초월한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를 대학이념으로 제정하였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사랑으로 교육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를 밝혀 가르친다”라는 뜻의 “明知”의 대학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적 사랑을 의미한다.

진리

일반적인 진리 뿐 아니라 기독교적 진리를 포함한다. 기독교적 진리란 넓은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참된 삶의 이치”를 가르킨다.

봉사

대학에서 연구하고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오늘날 사회적 요구가 높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자칫 대학의 주요 기능인 교육과 연구만을 지적으로만 성장발달하는 인간이 아닌 남을 사랑하고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조화로운 인간발달이 우리 대학교의 대학이념이라는 것을 말한다.

교육목적

명지대학교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인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올바른 활용방법을 연구교수하며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 봉사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기독교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기독교적 인격함양

2

심오한 학술 연구와 교수를 통하여 정보화 산업기술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3

자주적 주체 의식을 고양시켜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공헌

4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시켜 21세기 세계화 사회에서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인재상

1

명(明): 참신앙을 바탕으로 배움을 실천하여 세상을 밝히는 명(明)형 인재

- 융합: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역량
- 실용: 상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통섭적사고 역량

2

지(知): 참지식을 깨달아 스스로 성장하는 지(知)형 인재

- 창의: 참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체계적 사고 역량
- 자기주도: 자존감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창조적 도전 역량

3

인(人): 세계와 소통하며 기독교의 참사랑을 베푸는 인(人)형 인재

- 어우름: 팀워크와 리더십을 기반으로 세계(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사소통 역량
- 배려: 기독교의 가치인 참사랑을 실천하여 배려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역량

총장 메시지



MYONGJI UNIVERSITY Vision 2025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양성의 산실,
명지대학교가 새로운 내일을 써 내려갑니다!

1948년 개교 이래, 명지대학교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바탕으로 15만여 명의 실천적 지성인을 배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왔습니다. 오늘날 명지가 배출한 인재들은 사회 각계로 진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실천하며 대한민국과 세계 발전의 소중한 밑알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로 개교 77주년을 맞이한 명지대학교는 2016년 MJU2025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9년 1차 고도화를 거쳐 2022년에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며 명지대학교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MJU2025 3.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MJU2025 3.0은 명지대학교의 설립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함과 동시에,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연구·산학, 특성화, 대학 경영의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20대 핵심 과제와 57개 세부 과제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며, '2025년 국내 10대 명문사학 진입'이라는 비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적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유연한 학사제도로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며, 데이터 기반의 학생·교수자 역량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인프라 강화와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산업 육성을 도모하며,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과 AI·빅데이터 중심의 혁신적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미래사회 친화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학경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개방·소통·협력의 Open Campus를 실현하여 내외부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명지대학교는 교육·연구·행정 각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외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대학의 내실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과 탁월한 연구, 뛰어난 실적을 통해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성실·유능한 인재를 양성해나갈 것입니다. 국내 10대 명문사학을 넘어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우리 명지대학교의 힘찬 여정에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발전목표/추진전략

3대 발전목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양성

Creative &
Convergent Leader

사회에
공헌하는 연구와
산학협력 강화

Top-tier
Practical Research

사랑과 창조의
명지브랜드 확립

Myongji
Pride up

4대 추진전략



교육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교육체계 구축



연구·산학

연구인프라 조성을 통한
연구·산학 경쟁력 강화



특성화

미래사회 친화형
융합 인재 양성



대학경영

지속성장을 위한
대학경영 인프라 구축



명지의 경쟁력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금액

3년간 **약33억원**주관기관
교육부

사업기간

2022.03. ~ 2025.02.

대학혁신지원사업



금액

3년간 **약226억원**주관기관
교육부

사업기간

2022.03. ~ 2025.0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금액

2년간 **약19억원**주관기관
교육부

사업기간

2023.08. ~ 2025.05.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금액

4년간 **약220억원**주관기관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간

2023.03.~2027.02.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



금액

6년간 **약8억원**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간

2022.03.~2028.02.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사업



금액

5년간 **약36억원**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업기간

2022.03.~ 2027.02.



명지 캠퍼스의 봄



#전공·진로
Festival
#2025_4월기록



#섬김의
전통세족식
#2025_4월기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5_2월기록



#벚꽃축제행사
#2025_4월기록



#1학기동아리
박람회
#2025_3월기록



명지 캠퍼스



인문캠퍼스 (서울)

**미래를 선도하는 융·복합 지식환경으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는 서울에서도 젊은 문화를 대표하는 신촌권에 접해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몰려 있는 곳이자 동시대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인 신촌 및 홍대 지역과 인접한 덕분에 진취적인 기상과 상상력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입니다.

참다운 지성과 덕성에 기독교적 영성을 두루 갖춘 '사랑과 창조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명지대 인문캠퍼스는 학생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전공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첨단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방목학술정보관'과 최첨단 교육 연구시설과 복지 편의 시설 등을 갖춘 교육문화복합시설 'MCC(Myongji Campus Complex)'가 인문캠퍼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연캠퍼스 (용인)

자연친화적 환경과 최첨단 교육 인프라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합니다.

수도권 최대의 교육도시라고 불리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는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세계최대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무궁화위성관제소 등 첨단산업 관련 시설과 인접해 있습니다. 용인의 풍부한 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명지대 자연캠퍼스는 뛰어난 접근성 (서울에서 1시간 내외)과 자연 친화적인 교육환경, 그리고 첨단 교육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과 행정이 어우러진 첨단 복합관인 창조예술과, 캠퍼스 공연문화의 산실인 60주년 채플관,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시설인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친환경 실험 시설과 기자재를 갖춘 차세대 과학관, 에코바이오관, 제5공학관 등이 자연캠퍼스의 최첨단 교육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I

모집유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인문캠퍼스

단과대학	모집단위		재외국민(일반)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인문	인문콘텐츠학부	국어국문학전공 ★	4	선발인원 제한없음
		영어영문학전공 ★		
		미술사·역사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		
	아시아·중국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		
		일어일문학전공 ★		
		아랍지역학전공 ★		
	문예창작학과			
사회과학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	4	
		정치외교학전공		
	경상·통계학부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		
		응용통계학전공		
	법학과 ★			
경영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8	
	경영정보학과			
미디어 · 휴먼라이프	디지털미디어학부		6	
	청소년지도·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전공 ★		
		아동학전공 ★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융합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8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인공지능전공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아너칼리지 (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		10	
인문 캠퍼스 계			40	◎

※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모집단위내의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또는 전공을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음

※ 인문대학 중어중문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현지학습제도(7+1 학기제)에 따라 8학기중 1학기를 해외에서 수학함(p.24 학사관련 안내 참조)

※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인문, 자연)으로 입학한 학생은 미래융합대학 및 스포츠·예술대학을 제외한 인문/자연캠퍼스 모든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음(p.24 학사관련 안내 참조)

※ ★표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 개설학과로 교직이수 시 중등학교정교사(2급)자격증(단, 문헌정보학전공은 사서교사 2급, 아동학전공은 유치원정교사 2급,

청소년지도학전공은 전문상담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함(교육부의 교직과정 승인사항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부 정원인가 조정 등에 의하여 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자연캠퍼스

단과대학	모집단위		재외국민(일반)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화학 · 생명과학	화학·에너지융합학부	화학나노학전공	-		
		융합에너지학전공			
	융합바이오학부	식품영양학전공 ★			
		시스템생명과학전공			
스마트시스템 공과	기계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로봇공학전공>		-		
	스마트인프라 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환경시스템공학전공			
		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화공신소재 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반도체 · ICT	반도체공학부		-		
	전기전자공학부<전기공학전공·전자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 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스포츠·예술	디자인학부	비주얼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3	선발인원 제한없음 (단, 스포츠지도학전공(야) 미선발)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스포츠학부	체육학전공, 스포츠산업학전공★			
		스포츠 지도학 전공[야]★	축구(남)		
			농구(남)		
			배구(남)		
			테니스(남/여)		
			골프		
	아트앤멀티미디어음악 학부	건반음악전공			
		보컬뮤직전공(성악, 실용보컬)			
		작곡전공			
	공연예술학부 ★	연극·영화전공			
뮤지컬공연전공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	
		전통건축학전공			
	공간디자인학과				
아너칼리지 (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자연)		5		
자 연 캠퍼 스 계			10	◎	
총 계			50	◎	

※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모집단위내의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또는 전공을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음

※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인문, 자연)으로 입학한 학생은 미래융합대학 및 스포츠·예술대학을 제외한 인문/자연캠퍼스 모든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음 (p.24 학사관련 안내 참조)

※ ★표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 개설학과로 교직이수 시 중등학교교사(2급)자격증(단, 식품영양학전공은 영양교사 2급, 스포츠지도학전공은 실기교사) 취득이 가능함
(교육부의 교직과정 승인사항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부 정원인가 조정 등에 의하여 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II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 **접수기간**: 2025. 7. 7.(월) 10:00 ~ 7. 11.(금) 17: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별도의 원서 교부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 **접수처**: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hak.mju.ac.kr>)에 접속하여 “원서접수” 배너 클릭
※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형료 및 환불 안내> (p.23) 참조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5. 7. 7.(월) 10:00 ~ 7. 11.(금) 17:00	인터넷 접수(https://iphak.mju.ac.kr)기간 내 24시간 접수
서류제출	2025. 7. 7.(월) 10:00 ~ 7. 11.(금) 24:00	온라인(원서접수 사이트) 업로드
면접고사장 발표	2025. 7. 16.(수) 15:00 예정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hak.mju.ac.kr)
면접고사	2025. 7. 21.(월)	인문캠퍼스(서울)에서 실시
합격자 발표	2025. 8. 20.(수) 15:00 예정	입학처홈페이지(https://iphak.mju.ac.kr)
합격자 등록	2025. 12. 15.(월) 10:00 ~ 12. 17.(수) 15:00	문서등록
총원합격자 발표	2025. 12. 18.(목) ~ 12. 23.(화) 18:00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또는 전화 개별통보
등록금 납부	2026. 2. 3.(화) ~ 2. 5.(목)	
최종등록자 서류제출	2026. 2. 20.(금)	2026. 2. 2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원본 및 졸업예정자의 졸업증명서 등

※ 상기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우리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 총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2025. 12. 18.(목) ~ 12. 23.(화) 18:00까지 진행되며, 세부 일정 및 총원합격자 등록일정은 최초합격자 발표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원서접수

- 입학원서 접수기간과 마감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입학원서 작성 후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되며, **원서접수 완료 후 원서접수 취소, 모집단위 변경, 전형 및 지원자격 변경, 전형료 환불 등은 일절 불가**합니다.
- 입학원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 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제출서류와 입학원서 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등 동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복수 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입학원서 개인정보 정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수정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26학년도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시행하며, 다음의 원서접수 업체가 대행합니다. 만약 접수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원서접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접수업체 안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학어플라이 (<https://www.jinhakapply.com>) 전화 1544-7715

■ 온라인 서류제출

- 모든 서류는 **온라인(원서접수 사이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기한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받은 원본 또는 인터넷 발급받은 원본 서류의 스캔본(PDF)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에 한해(용량 초과 등) 이메일 제출(iphak@mju.ac.kr)을 허용합니다. 제출기한은 온라인(원서접수 사이트) 업로드와 동일합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합격취소) 처리합니다.

온라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실제 발급받은 원본 또는 인터넷 발급받은 원본 서류의 스캔본을 제출
- 2) 제출서류는 모집요강에 안내된 제출서류 목록표의 항목별 스캔본을 각각 준비하며, 파일명은 제출서류 목록표의 연번 및 제출서류명으로 함
(예시. 5_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3) 항목별 저장한 파일은 목록표의 연번 순서에 맞춰 한 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 압축파일의 파일명은 지원자 본인이 지정(파일 업로드 후 파일명은 자동으로 변경됨)
- 4) 업로드 가능 용량초과 등 온라인 업로드가 부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제출 허용하며, 제출기간은 온라인 제출과 동일
(이메일 제출시 제목: 재외국민전형 지원자_수험번호_성명)
- 5) 파일 손상 및 낮은 해상도, 스캔 오류 등으로 인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서류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업로드
- 6) 별도의 제출서류 도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 면접고사

- 지원자 모두 면접고사 대상자입니다.
- 면접고사 당일 신분확인을 위해 본인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고사진행에 있어 특별한 별도 관리(도움)가 필요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전 입학처로 연락하여 고사 진행과정에 필요한 각종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상의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정(p.12 참조)에 따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합격여부 확인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대학입학 전형결과 성적이 우리 대학교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등록

문서등록	등록금 납부
기간: 2025. 12. 15.(월) 10:00 ~ 12. 17.(수) 15:00 방법: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등록	기간: 2026. 2. 3.(화) 10:00 ~ 2. 5.(목) 15:00 금액: 등록금고지서 출력 시 확인

※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 안내 예정

- 등록방법: 일정에 따라 문서등록 후 등록금을 납부(최종등록)
- 등록기간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거나 문서등록 후 최종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처리합니다. 문서등록 후 등록금을 납부(최종등록)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인터넷으로만 교부하며, 필요시 합격자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시 전액 장학대상자(등록금 “0원”)도 등록금고지서 확인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최종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충원합격자 발표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2025. 12. 18.(목) ~ 12. 23.(화) 18:00까지 진행되며, 세부 일정 및 충원합격자 등록일정은 최초합격자 발표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한 발표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개별통보 하지 않음),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화 개별통보 시 입학원서에 입력한 연락처의 오류 또는 연락두절(연락처 변경 등)로 인하여 합격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3회 이상 수신 불가) 차순위자를 충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전화, 휴대전화 등이 변경된 경우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입학원서 개인정보 정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수정신청해야 합니다.

최종등록자 서류 제출

- 최종등록자는 원서접수시 온라인(원서접수 사이트) 업로드한 서류 전체를 반드시 우편제출해야 하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발송용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겹봉투에 부착한 후 제출합니다.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로 지원한 최종등록자는 반드시 최종 졸업 관련 서류(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및 지원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서(졸업일 이후 발급)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원서접수 사이트) 업로드 기간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은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원본을 기한 내 우편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일본 등 학제 상 고교졸업이 늦은 국가의 경우 2026. 3. 27.(금)까지 제출을 허용합니다.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4층)

III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수시모집 유의사항

I 복수지원 관련 사항

- 재외국민전형 포함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 지원횟수 제한, 정시모집 군별 지원회수 제한사항 등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회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지원한 모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회수로 산정합니다.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I 합격자 발표 관련 사항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로 통보 받은자(홈페이지 게시 등))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상관없이 합격자로 처리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등록의사는 등록(문서등록, 예치금 납부 등) 결과로 판단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예비 합격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수시 및 정시모집의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I 등록 관련 사항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문서등록, 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총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합격자가 총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42조의2에 의거, 합격자의 등록마감 후 입학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등록 상황을 전산으로 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면접평가 전 예비소집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지원자는 학교 위치, 교통편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 입학전형의 지원자격을 위반한 경우, 전형자료에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및 일반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 또는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 본 요강의 내용은 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V

전형별 안내

 지원자격 요약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 아래의 전형유형을 충족 해야함

지원구분	세부 지원자격
재외국민(일반) -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학생 본인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을 국외근무자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하고, 국외근무 보호자와 배우자는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중·고교과정 연속, 비연속 모두 지원 가능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지원 가능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개정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지원자격에 포함됨**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본교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국제교류지원팀(☎02-300-1513)으로 문의

재외국민(일반)

1 지원자격

-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 근무, 체류기간 최소 인정기준

구분	학생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배우자
	재학기간	체류기간	근무기간	체류기간	체류기간
재외국민(일반)	3개 학년	재학기간의 3/4	3년	재학기간의 2/3	재학기간의 2/3

2 국외 재학기간 인정 기준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구분	세부 재학기간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는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3 국외 체류일수 인정 기준

구분	세부 재학기간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4 기타사항

-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은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 상 국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 현재 계속 근무, 거주, 체류 중일 경우 기간을 학생의 졸업예정일까지로 산정
- 보호자의 근무, 거주, 체류기간은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하며, 보호자가 소속 기관(회사)의 공식적인 발령이 아닌 개인적인 유학, 교육, 연수, 안식년, 여행 등으로 국외에 근무/거주하는 기간은 제외
-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단, 학생의 재학기간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이전까지 배우자의 국외 거주 사실을 확인
-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1 지원자격

-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지원자격에 포함됨
 - ※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음

■ 국외재학, 근무, 체류기간 최소 인정기준

구분	학생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배우자
	재학기간	체류기간	근무기간	체류기간	체류기간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12년		-		-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		-

2 국외 재학기간 및 체류기간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인 12년(24학기)에 준하는 전교육과정 국외 이수를 원칙으로 함
 - ※ 국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인정
 -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자격을 인정
 - ※ 국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중·고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은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
 - ※ 국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교육과정 국외 이수자로 인정

V

지원자격 공통

1 국외학교 인정기준

- 국외학교는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만 인정하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및 국외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등의 학력은 미인정(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학력을 인정)

2 국외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국내 교육과정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 ~ 6학년 과정(Grade 1 ~ Grade 6)	Year2 ~ Year7 과정
중학교 과정	7 ~ 9학년 과정(Grade 7 ~ Grade 9)	Year8 ~ Year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 ~ 12학년 과정(Grade 10 ~ Grade 12)	Year11 ~ Year13 과정

3 국외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

- 우리나라 학제인 12년에 준하는 전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I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불인정

-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사유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학교발급 사유서, 관련규정 등)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보호자 근무국의 지역·종교·전쟁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3국 소재학교를 재학한 경우 제3국 수학인정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국외 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재학기간 산출을 졸업 예정일까지로 하고, 2026년 2월 27일(금)까지 졸업하여야 함. 단, 학제 상 고교졸업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 2026년 3월 졸업까지 인정

◇ 202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공지사항 ◇

자격기준에 대한 판단은 본 요강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합니다.

VI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체	일괄전형	면접고사 100%

2 면접평가

구분	내용		
면접방법	• 개별면접(면접위원 2~3명)		
면접자료	• 면접기초자료 작성(20분) - 2~3문항의 간략한 자기소개 형태이며, 평가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면접시간	• 5분 내외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및 내용	• 진로역량	35%	-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
	• 공동체역량	35%	- 성실성, 공동체의식
	• 의사소통능력	30%	- 논리성, 전달능력

※ 스포츠·예술대학 내 모집단위 지원자의 경우 면접고사 시 간단한 실기테스트가 진행될 수도 있음

3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 모집인원의 100%를 면접고사 성적순위에 의하여 선발하며,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고사 성적이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중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합니다. 단,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일 경우 모두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충원 선발합니다.
- **대학입학 전형결과 성적이 우리 대학교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상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재외한국학교도 포함되나, 학교폭력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대상(국외고 출신자 등)인 경우 미반영
- 학교폭력 조치사항 감정기준

조치사항		감정기준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감점 없음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200점 감점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300점 감점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결격처리
제9호	퇴학처분	

- 지원자 유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원서접 수 전 반드시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며(기재내용 삭제는 입력시기 및 해당 호별 보존기간에 따라 상이함), 사실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응답을 사실대로 체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작성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VII

제출서류



재외국민(일반)

연번	서류명			필수 여부	비 고	
1	입학원서			○	• 원서접수 시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서류로, 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물' 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지원자의 재학기간 및 국외근무 보호자의 근무기간 기재사항은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와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2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		
3	학력조회 동의서			○		
4	초·중·고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	• 전학년 증명서 제출 • 전입(입학), 전출(졸업)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재외한국학교(교육부 인가) 또는 국내학교의 재학·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로 대체 가능 • 초→중→고등학교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6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 각 연도별 학기 개시일/종료일에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표시 • 인터넷 출력, 캡처 화면 출력본 인정(단,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7	가족관계증명서			○	• 부 또는 모 기준(상세)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부, 모, 지원자 각 1부	
9	출입국사실증명서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지원자의 국외 재학기간, 국외근무 보호자의 근무기간 등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	
10	여권 사본			○	• 부, 모, 지원자 각 1부 • 신여권 제출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11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	• 부, 모, 지원자 각 1부	
12	보 호 자 재 직 관 련 서 류	국외파견 재직자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 필수	• 본사 인사권자 발행 • 국외 근무기간 및 근무국가 반드시 명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 사본		• 상사주재원 필수 제출(발급기관 원본대조필)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으로 대체 가능	
		현지 취업자	재직(경력)증명서		• 국외 근무기간 및 근무국가 반드시 명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세 납부이력 사본		• 지원자의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기간 • 법인세 납부이력 제출이 어려울 경우 세금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이력 제출 가능	
		현지 자영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 납부이력		• 지원자의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기간 • 사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이력 제출	
13	사유서				• 해당자에 한함 - 재학기간(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지 등), 체류기간, 재직기간 등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소명할 사실이 있는 경우,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학교발급 사유서, 관련규정 등) 제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재학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제출	
14	제3국 수학인정서				• 해당자에 한함 - 보호자 근무국의 지역·종교·전쟁 등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3국 소재학교를 재학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15	기타				• 부모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국외근무자 기준), 지원자의 기본증명서 • 부모 사망 시: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개신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회원교단에서 인정하는 종교단체로 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단 범위는 지원자격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

※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연번	서류명	국외 이수자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 주민	비 고
1	입학원서	○	○	○	• 원서접수 시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서류로, 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물' 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
2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	○	○	
3	학력조회 동의서	○	○		
4	초·중·고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	○	△	• 전학년 증명서 제출 • 전입(입학), 전출(졸업)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재외한국학교(교육부 인가) 또는 국내학교의 재학·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로 대체 가능 • 초→중→고등학교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6	학력인정증명서			△	• 북한학교 출신자에 한함 •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
7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		• 각 연도별 학기 개시일/종료일에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표시 • 인터넷 출력, 캡처 화면 출력본 인정(단,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해당자에 한함
9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10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11	출입국사실증명서	○	○		
12	여권 사본	○	○		• 지원자 기준 1부 • 신여권 제출자는 여권정보증명서 제출
13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	○		• 지원자 기준 1부
14	사유서	• 해당자에 한함 - 재학기간(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지 등), 체류기간, 재직기간 등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소명할 사실이 있는 경우,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학교발급 사유서, 관련 규정 등) 제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재학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유의사항

-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초·중·고등학교 성적/재학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등)의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거주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의 증명서는 학교장 직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 발급 서류는 2025. 6. 16.(월)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국외 발급서류는 발급 기준일을 제외합니다.
-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모집요강(p.13) 참조

최종등록자 서류제출 방법: 모집요강(p.14) 참조

VIII 기타 안내사항

☼ 전형료

구 분	전형료
재외국민(일반),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120,000원
북한이탈주민	7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우리 대학교에서 부담합니다.

☼ 환불 안내

■ 전형료 환불 원칙

- 원서접수 완료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전형료 환불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전형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형료 환불기준	환불액
지원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 금액
대학의 귀책 사유(사전공지 없이 전형일 변경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 전형료 전액
천재지변 및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사유[입원(질병, 사고) 사망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납부 전형료 전액

■ 전형료 비례 반환

- 우리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2026. 4. 30.(목)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우리 대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학상담 안내

입학관리팀: 02-300-1799, 1800
 입학처 홈페이지: <https://iphak.mju.ac.kr>
 대학 홈페이지: <https://mju.ac.kr>

학사 관련 안내

1. 우리 대학교에 등록한 모든 신입학(외국인 학생 제외)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 실현과 전인교육을 위해 재학 중 **채플(4학기)**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신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질병, 의무군복무, 모성보호, 창업,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를 제외하고 입학 후 첫 학기를 휴학할 수 없습니다.
3. 인문대학 중어중문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현지학습제도(7+1 학기제)에 따라 8학기중 1학기를 해외에서 수학합니다(2학년 2학기 중국 현지 대학(루동대학교)으로 파견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총 17학점 인정 예정).
4.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모집단위내의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또는 전공을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미래융합대학 및 스포츠·예술대학을 제외한 인문/자연캠퍼스 모든 학과(전공이 없는 학부 포함), 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제한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 M프레시맨 세미나, 1학년 공통교양 및 핵심교양 과목의 캠퍼스간 교차수강은 불가하며 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선택은 본교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6. 건축학부 이외의 학생이 건축학부 다전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전과는 계열별 구분 없이 실시하되,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단,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은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야간 학부 학과 전공간 전과(부) 불가

* 스포츠·예술대학 학부 내 전공 간 전과(부) 및 건축대학 내 전체 학과 전공 간 전과(부) 불가

인문학사지원팀: 02)300-1471~2
자연학사지원팀: 031)330-6024, 6026

장학금 안내

설립자장학금*,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백마장학금, 모범장학금, 자치활동장학금, 고시장학금, 보훈장학금*, 체육특기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 명지사랑장학금*,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미디어장학금, 세계화장학금, 학술활동장려장학금*, 기독교우미장학금, 연수장학금, 사회진출지원장학금, 군위탁장학금*,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장학금, 명지다움장학금, 그린캠퍼스활동지원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교육훈련장학금, 글로벌버디장학금, 창업지원장학금, 성인학습자전형장학금*, 학습바우처장학금, 평생학습장려장학금, 취업지원장학금, 계약학과장학금, 융합인재육성장학금, 명지마일리지장학금 외 다수의 교내외 장학금

※ *은 입학전형에 의해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금임

※ 위 사항은 학칙 및 장학규정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장학종별 및 수혜자격 기준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참조

인문학학생지원팀: 02)300-1521
자연학생지원팀: 031)330-6035

생활관(기숙사) 안내

인문캠퍼스(서울)

- 홈페이지 : <http://dorm.mju.ac.kr>
- 연 락 처 : 02-300-1768
- 위 치 :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내)

자연캠퍼스(용인)

- 홈페이지 : <http://dorm.mju.ac.kr>
- 연 락 처 : 031-330-6082
- 위 치 : (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

IX

참고자료[전년도 입시경쟁률]



2025학년도 입시결과 ※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제외

구분	단과대학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인문 (서울)	인문대학	4	11	2.75:1
	사회과학대학	4	7	1.75:1
	경영대학	8	13	1.63:1
	미디어·휴먼라이프대학	6	14	2.33:1
	인공지능·소프트웨어융합대학	8	12	1.50:1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	10	12	1.20:1
인문캠퍼스 소계		40	69	1.73:1
자연 (용인)	스포츠·예술대학	3	8	2.67:1
	건축대학	2	1	0.50:1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자연)	5	5	1.00:1
자연캠퍼스 소계		10	14	1.40:1
총계		50	83	1.66:1





별첨

(각종 제출서류 양식)

학력조회 동의서

성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	--	------	--	------	--

순번	학교명	학교 주소	재학기간
		학교 전화 / 팩스 / 학교 홈페이지	
1			~
2			~
3			~
4			~
5			~
6		원서접수 시 자동 입력되는 내용으로, PDF 다운로드	
7			~
8			~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심사 서류로 제출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지대학교가 지원자 본인의 학적 및 성적을 조회함을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

사유서

성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명지대학교	대학	학과(부)
전화번호		휴대전화	

세부사항(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재학기간 미충족	체류기간 미충족	재직기간 미충족	□ 기타
	☐ 학기결손/중복 ☐ 월반 ☐ 휴학 ☐ 조기졸업	☐ 지원자 ☐ 부 ☐ 모	☐ 부 ☐ 모	

필요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작성

[사유서 제출 방법]

- ※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소명할 사실이 있는 경우, 양식에 맞춰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 (인)

명 지 대 학 교 입 학 처 귀하

제3국 수학인정서

성명		수험번호	
모집단위	명지대학교	대학	학과(부)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지원자의 수속국가가 국외근무자의 근무국과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관련 사유는 해당 기관(학교, 직장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추가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국외 근무자	근무국가	근무기간	지원자	수학국가	수학기간

제3국 수학 사유

필요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작성

본인은 제3국 수학 사유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취소, 향후 입학지원 불허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양 일

국외근무자 성명 : (인)

지원자 성명 : (인)

명지대학교 입학처 귀하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약칭: 사실증명신청서, 약호:A322)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address in English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Address in English ☐ 표기 Yes ☐ 미표기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부터(from)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본인은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fees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n case of refusal to consent to the verific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이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증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2026학년도 명지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지원학과(부) :		수험번호 :	지원자 성명 :
지 원 구 분	재외국민(일반)	☐ 국외근무 공무원 자녀	☐ 국외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결혼이주민 포함)	☐ 북한이탈주민

◎ 지원학생 기재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학 교 소재지 (국가명)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기 간	재학년수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년	개월

원서접수 시 자동 입력되는 내용으로,
PDF 다운로드

◎ 부모 기재사항

구 분	체 류 기 간(근무)		체류국	근무처	구 분	체 류 기 간(근무)		체류국	근무처
	기 간	체류년수				기 간	체류년수		
부(父) 성 명 ()	. . . ~	년 개월			모(母) 성 명 ()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외국인 기재란	국적()	시민권번호()			외국인 기재란	국적()	시민권번호()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인문캠퍼스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자연캠퍼스 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https://iphak.mju.ac.kr>

입학관리팀 02)300-1799, 1800
인재발굴팀 02)300-1797, 1844

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s://iphak.mju.ac.kr>)에 공지되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